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2. 4 선고 2024가단56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2. 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02. 05.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금 12,990,9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90,919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흡수합병 전 주식회사 D)는 E 주식회사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 177308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7. 'C은 원고에게 4,482,476원 및 그 중 3,552,033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F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경위

-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4. 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H, C(상속 지분 각 1/3,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 2) 공동상속인들은 2024. 2. 29.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4. 2. 29. 접수 제51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피고는 소외 G에게 2024. 2.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4. 2.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4. 2. 29. 접수 제5169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 방식의 원상회복을 구하고, 피고는 ① C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 C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처분대금을 수령해갔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② 설령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나 그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90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1) 사해행위 성립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특별히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일응 유효한 처분문서에 기해 이루어져 부동산등기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 2) 피고의 선의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① 피고는 망인 사망과 관련하여 병원 165,660원, 장례식장비 6,300,000원, 장례물품비 3,754,600원, 장례외부업체비용 1,789,500원, 화장봉안비 600,000원, 상속등기비용 1,059,916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4.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대금 3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9. 잔금 30,000,000원을 받아 C에게 11,000,000원을, 다른 상속인인 H에게 9,000,000원을 각 이체해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형식상 C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모두 정산해주었으므로 피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가 망인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가액이 공시가격의 약 150%에 상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라 보이지 않고, 계약에 따른 등기 이전 과정에서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그 권리관계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라 보인다.

③ C이 2023. 7.경 자신의 친구에게 200,000원을 빌려달라며 전화를 하여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당시까지 C은 피고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2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다지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C의 친구를 통해 C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비로소 연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피고 등 다른 상속인들은 C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며, C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백주연

별지